##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

(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92 발 의 년 월 일:2023년 02월 06일 자: 최호정,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의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중화,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승복,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76명)

### 1. 주문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기관임과 동시에 교육과 교육공무원에 관한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교육자치를 선도하고 국가위임사무를 법령에 따라 충실히 수행해야할 서울시교육청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훼손하고 ▲교육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하며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관리 부실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자립형사립고 미충원 보전금에 대한 미지급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주무부처장관인 교육부장관 은 부적절하고 잘못된 사업 집행으로 정책 대상자인 학생과 일선 학 교의 피해가 반복되고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 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자치사무 및 국가위임 사무 업무 전반에 걸쳐 엄정하고 면밀한 종합감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함.

####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의회가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면서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삭감한 예산에 대한 집행 계획을 발표하고, 일선에서는 삭감으로 인해 편성되지 아니한 사업을 강행하고 있음. 이는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공공기관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인, 사전의결 원칙이 무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1월 9일 서부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월 17일 성동광진교육지원청까지 총 9곳에서 신년 간담회를 진행하였음. 학부모는 물론 학생까지 참여한 간담회에서 시의회가 교육청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일부 사업을 못하게 됐다고 사실을 호도하며 서울시의회의 심의권한을 부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체 감사를 통해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석면검사 기관의 부정 및 위반 행위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교육부가 학생들 건강과 학교 현장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심대 한 사안에 대해 신속히 서울시내 각급 학교 전수조사를 시행할 필요 가 제기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일반고로 전환하면 지원금 25억 원을 준다는 공문은 시행하면서 정작 자사고에 지급해야 할 보전금이 있다는 사 실은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음.
-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지난 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결과는 국가공무원인 교사 채용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저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런 유사 사례가 더 없는지 철저한 확인을 통해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성이 크므로, 다른 국가공무원 채용과정에 대해서도 사무를 위임한 교육부장관의 철저한확인이 요망됨.

#### 3. 이송처

○ 교육부장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학교도 완연한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학교 환경에 맞춰 교육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 양성 등 서울시교육청이 져야 할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예산 편성 및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문제점들을 보면, 지방교육자치의 선도적 집행기관으로 교육행정의 공적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의회 심의 결과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또 일부 사업은 집행과정에서 부적절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결기관의 예산심의 권한이 훼손되고 잘못된 사업 집행으로 정책 대상자인 학생과 일선 학교의 피해가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신속한 발생 경위 파악과 책임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기관인 교육부 장관의 감사를 촉구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시한 채 '다정다감' 사업 등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의 집행 계획을 언론에 발표할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는 예산이 미편성된 사업이 강행되고 있어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가 요망됩니다.

작년 12월 서울시의회는 의결기관에 부여된 정당한 예산심의 권한을 행사해,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본 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다정다감' 사업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지원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당 평균 1억 원씩, 5년간 평균 5억 원가량의 자율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예산 집행 계획을 발표했으며, 심지어 해당 보 도자료에서 각 학교에 해당 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 전 학교 대상의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및 재정 관련 법령에서는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하며, 예외적인 사항 외에는 성립 전 사용과 단체장 선결처분을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 권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공공기관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인, 사전의결 원칙이 무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심의권한을 부정하고 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공개된 장소에서 조직적으로 행한 것에 대해 감사를 요청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9일 서부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월 17일 성동광진교육지원청까지 총 9곳에서 신년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학부모는 물론 학생까지참여한 간담회에서 시의회가 교육청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일부 사업을 못하게됐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서울시의회의 심의권한을 부정했습니다.

'서울교육청 예산삭감 성토대회 물의... 시의회 반발에 꼬리 내려(2023.01.20. 뉴시스)'라는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교육지원청을 돌며 시의회에 의해 감액된 예산항목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식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이 같은 방식에 부적절함을 느낀 학부모들이 시의회 측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외부에 알려

지게 된 것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무시하는 일련의 사안에 대해 경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규명해 집행기관의 잘못된 사업 집행을 막고 의결기관으로서 시의회의 명예와 권한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셋째, 서울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석면조사기관과의 계약 이행사 항을 살펴보고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밝히는 전수조사 방식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석면검사 기관의 감사 결과,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4곳이 밝혀졌습니다. 교육청이 공익제보를 토대로 4개 업체가 맺은 계약 건에 대 해 감사를 진행, 해당 업체가 계약한 17개 학교의 석면 보고서에서 내용을 서로 베끼기 한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개인이 두 개의 사업체에 적을 두고 다수 학교와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악의적인 의도가 분명한 행위로,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석면검사기관의 부정 및 위반 행위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석면 보고서 허위 작성 문제를 두고, 언론에서는 교육청의 허술한 관리 속에 진행되어온 업계의 공공연한 관행이 드러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교육청은 계약을 부실·부정하게 이행한 자의 계약 해지 등의 처분과 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 제한 등 관리감독자로서 역할이 있는 만큼, 학생들 건강과 학교 현장의 안전성을 위협 하는 심대한 사안에 대해 신속히 서울시 전 학교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을 촉 구합니다. 넷째,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일반고로 전환하면 지원금 25억 원을 준다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정작 자사고에 지급해야 할 보전금이 있단 사실은 숨겨온 것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미집행한 사태가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자립형사립고 사회통합전형은, 정원의 20%를 사회 취약계층으로 선발할 것을 의무화해놓고, 미충원에 따른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보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도 매년 자사고 미충원에 따른 입학금과 수업료 결손액을 교 부받고 있지만, 지난 9년간 자사고에는 보전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일부 자사고는 재정난으로 일반고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은 현재 보전금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받아, 예산편성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문제 제기에, 올해부터는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지급하겠다면 서 지난 미지급 금액은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이 져야 할 공적 책임 의식, 집행기관으로 당연히 가져야 할 의결기관에 대한 이해, 업무 집행에 대한 전문성 등 모든 면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이는 서울 시교육청의 비상식적인 업무 집행 양태를 바로 잡고, 정상적인 예산과 사업 집행기준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또한 지난 1월 27일 서울시교육감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판결은 국가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바, 절차적 정당성 등의 미흡으로 교단에 서거나 서울교육 행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할사람들이 채용된 다른 유사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권을 가진 중앙정부 주무부처 장관임으로 위 사안과 관련해 철저한 종합감사를 촉구합니다.

2023. 2.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